

「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」 일부개정 보고

「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」에 따라 정관 일부 개정 사항을 보고드립니다

□ 관련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」 제42조(정관의 변경)
 - 정관 개정절차 : 이사회 의결 ⇨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⇨ 시장 승인
 - ※ 2025년 제4회 이사회 심의·의결 완료('25.5.26.)

□ 정관 개정사항

- 개정사유 : 기능 중심의 유지보수·환경정비 직무를 관리운영직으로 편제·조정
- 개정내용 : 시설관리직 직군 세분화 및 정원 내 인원 조정 <별표2>
 - 정원 변경 : (기존) 25명 → (변경) 96명 ※ 자연감소분(정년퇴직, 기타퇴직 등)을 활용한 순차적 전환
 - 명칭 세분화 : (기존) 시설관리직 → (변경) 관리운영직 (업무지원, 시설관리, 시설운영) 3개 분야

[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원 조정(안)]

기 존			개 선			증	감
총 계		391	총 계		391	71	△71
임 원		4	임 원		4		
일반직	소계	362	일반직	소계	291		△71
	1급	2		1급	2		
	2급	4		2급	4		
	3이하	356		3이하	285		△71
시설관리직	25		관리운영직	소계	96	71	
				업무지원*	9	3	
				시설관리*	28	9	
				시설운영*	59	59	

※ 관리운영직 세부직군(* 표시)은 정관 정원표에 미표기 [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]

- 기타사항 : 직군별 변경된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총 정원(391명) 내
현원으로 운영 ※ 현원과 동일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

- 향후계획 : 서울시 승인 요청 및 정관 공포('25.6월)

